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9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무효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30. 접수 제3406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16. 5. 2. 접수 제25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제25916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법원 2016. 5. 30. 접수 제34061호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6. 5. 31. 다시 합의해제의 의사표시를 무효 내지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 즉 회복하여야 할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그 회복에 의하여 등기상 직접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이 사건 말소등기에 의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는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목

목

1. 서울 강서구

대108.4㎡

2. 서울 강서구

벽돌조 평슬래브위 아스팔트 원글지붕

2층 단독형 다가구주택 4가구

1층 64.86㎡ 2층 58.28㎡

지층 66.96㎡

내역 : 지층-2가구, 1층-1가구

2층-1가구

